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6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가합203912 손해배상(기)
원 고 주식회사 해●●●●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
피 고 1. 하○○
2.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
담당변호사 박찬주
변 론 종 결 2014. 8. 27.
판 결 선 고 2014. 9. 2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하○○은 161,250,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4.부터 2014. 9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하○○과 연대하여 위 돈 중

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하○○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하○○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하○○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하○○은 201,562,715원, 피고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하○○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

1) 원고는 파이프제조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702-20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268.32㎡ 건물(사무동)과 같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58㎡ 건물(기숙사동)[이하 위 사무동, 기숙사동 건물을 합하여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]의 소유자이다.

2) 피고 하○○은 2011. 8. 16. 이■■■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'팔도화학'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가공 공장(이하 '이 사건 공장'이라 한다)을 운영하던 사람이고, 피고 △△△△화재보험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피고 하○○과 보험기간을 2012. 4. 30.부터 2015. 4. 30.까지로 하여 피고 하○○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(기계, 내부시설, 상품/반제품)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 대물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'무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'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.

나. 이 사건 화재의 발생

2013. 3. 16. 01:0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 한다)가 발생하였는데,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고,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, 기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.

다. 이 사건 화재 원인 조사 결과

1) 경북 칠곡소방서는 2013. 3. 16. 01:09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:31경 진화 작업을 마쳤고, 화재 당일 화재조사를 실시하였다. 경북 칠곡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7. 발화지점 판정

- 관계자 진술 : 팔도화학 직원 정■■■(남, 72년생)의 진술에 의하면 야식을 먹은 후 이 사건 공장으로 와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기 부근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함.
-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: 이 사건 공장 좌측 압출기 부근에서 발화 후 이 사건 공장 연소 및 마당에 야적된 폐비닐 등을 연소 후 이 사건 건물로 연소 확대 된 것

으로 추정됨.

8. 화재원인 검토

- 방화 가능성 :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
- 전기적 요인 : 배제할 수 없음(이 사건 공장 전체 소실정도가 심하여 요인식별 불가)
- 기계적 요인 : 압출기 이상가열 등 배제할 수 없음
- 가스누출 : 해당 없음
- 인적 부주의 등 :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
- 연소 확대사유 : 페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앞마당에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며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로 인하여 화재가 강하였으며 복사열 및 강풍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 됨.

9. 결론

- 현장조사 결과 : 미상
 - 발화열원 : 미상(경찰 및 유관기관과 정밀감식, 감정 진행 중)
 - 발화요인 : 미상
 - 최초 착화물 : 미상
 - 발화 관련 기기 : 미상
 - 연소 확대물 : 페비닐 등 가연성 물질
 - 연소 확대 사유 :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및 강풍

2)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북 칠곡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, 경북 칠곡경찰서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차단기, 배선 등을 분석한 후 2013. 4. 17.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.

1. 검사(경과 또는 시험)

- ◆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건물임.
- ◆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,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음.
- ◆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,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, 건물1 중

앙 및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함.

2. 검토

- ◆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붕괴되고,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 서, 동 부분의 기기 및 배선이 대부분 심한 연소로 유실 및 변형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,
- ◆ 건물1 중앙 부분에 위치한 분전반2의 메인 차단기는 '트립'된 상태이나, 분전반2 부하 측 배선 검사 시, 대부분 연소 유실 및 변형된 상태이고,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,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의 논단은 불가함.
- ◆ 건물1의 배선 중, 메인 분전반 차단기 연결 배선 및 분전반1 좌측의 컨트롤 패널에 연결된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,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 과정에서 형성되거나, 연소 확대과정에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으나,
- ◆ 메인 분전반 차단기 배선의 단락흔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으며, 상대적으로 전원 측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으로서,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◆ 컨트롤 패널에 연결된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동 배선의 부하 측 배선이 유실되어 부하 측 배선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며, 동 단락흔에 의해 발화되었을 경우, 분전반2의 차단기가 트립되기 어려운바,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.

3. 감정 결과

이상 검사 및 검토 결과,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, 변형 및 붕괴된 상태이며, 동 부분의 심한 연소 변형 및 유실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.

라. 이 사건 화재 목격자의 진술 요지

1) 팔도화학 소속 근로자 정□□

○ 이 사건 공장 중 제2 공장에서 폐비닐을 용융압출기에 넣어 재생하는 작업을 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, 제2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"불이야"라고 소리

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, 이 사건 공장 중 제1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, 화재 장소로 다가가보니 불길이 제1 공장 내부에 야적해 놓은 폐비닐에 옮겨 붙고 있었다.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음에도 불길이 너무 거세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이 사건 건물과 주식회사 메가텍 공장으로까지 화염이 번졌다.

○ 제1 공장에는 2013. 3. 15. 19:00경부터 2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폐비닐 용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, 00:00경부터 01:00경까지는 야참시간이므로,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.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제1 공장으로 갔을 때 위 근로자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.

○ 폐비닐을 용융하는 기계인 압출기는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된 기계이므로, 압출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, 미세한 물질과 석유화합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먼지가 전기 패널 등에 붙어 있다가 스파크로 인한 전기화재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. 따라서 야참을 먹는 시간 동안에는 압출기의 작동을 정지 지켜 놓아야 하나, 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. 위 근로자들이 야참을 먹고 난 후 작업을 하기 위해 2013. 3. 16. 01:00경 제1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제1 공장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"불이야"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.

○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제1 공장에 근로자들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한 관리·감독인은 없었고, 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팔도화학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모른다.

2) 피고 하○○

○ 2013. 3. 16. 01:05경 팔도화학 소속 근로자 정▣▣의 전화를 받고서 이 사건

화재 발생사실을 알았고, 이 사건 공장으로 오면서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.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편에서 불길의 번지고 있었다. 불길은 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전체 및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졌다.

○ 정▣▣는 야참을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이 사건 공장 좌측에 있는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면서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계속 번졌다고 하였다.

3) 원고 대표이사 채◆◆ : 원고 소속 직원 박□□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알았고,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불길이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였다.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소속 직원 8명이 불길을 피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후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구경만 하였다.

마.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'참고인·피해자들의 진술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결과 등으로 볼 때,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켜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,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놓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'는 이유로 경북 칠곡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, 6, 7호증, 을 제1, 2, 3, 5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6호증의 1,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의 칠곡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화재는 피고 하○○이 점유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사용·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, 피고 하○○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(혹은 민법 제756조)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합계 201,562,715원(이 사건 건물 수리복구비 169,778,715원 +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 피해액 31,784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, 피고 회사는 피고 하○○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하○○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 요지

1) 이 사건 화재는 발생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하○○은 이 사건 공장 전기설비에 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공장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·보존상 하자에 기인하였다거나 피고 하○○의 관리상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, 피고 하○○에게 공작물책임 내지 일반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.

2) 설령 피고 하○○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,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(이하 '실화책임법'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50% 이상 경감되어야 한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관련 법리

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·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).

나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1)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,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비록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, ① 경북 칠곡소방서의 초동 화재조사 과정에서 팔도화학의 직원인 정▣▣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기 부분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, 피고 하○○도 정▣▣로부터 이 사건 공장 좌측에 있는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화재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공장 전체와 이 사건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,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는데,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,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, 이에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

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하였으나,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, 변형 및 붕괴된 상태라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란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, 이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가 발화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 내 가연물이 심하게 소훼되어 그 잔해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, ③ 이 사건 공장에는 화재 발생 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·감독인이 없었고,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압하기 위한 화재감지장치, 스프링클러나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,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재질로 건축되었고, 각종 기계장치가 설치된 공장으로 사용되어,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이 사건 공장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았고,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마당에는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되어 있어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폐비닐 등에 착화될 경우 화재가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개연성이 높았는데, 경북 칠곡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실제로 위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급격한 연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건물의 거리가 근접하여 있고, 이 사건 건물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역시 폐비닐 등 화재로 인하여 빠르게 연소되기 쉬운 물건들을 취급하고 있었던 점,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팔도화학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나섰으나 실패하였고, 이후 불길이 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전체 및 이 사건 건물로까지 확대된 점, ⑥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으로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화재신고를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빠르게 연소가 될 경우에는 진화작업을 하더라도 그

손해의 확대를 막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재현장이 심하게 소훼되었고, 그 과정에서 배전반 및 전기배선 등이 녹아버려 화재 직전의 상태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,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는 객관적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화재가 최초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는 민법 제758조 및 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, 가연성 강한 페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 하○○으로서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순히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점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물건들까지 소훼시켰는바,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점유자인 피고 하○○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,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연소·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, 피고 하○○은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, 피고 회사는 피고 하○○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,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다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들은 먼저, 피고 하○○이 주식회사 대구전기안전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매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공장에 설치·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하○○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주식회사 대구전기안전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장에 설치·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, 피고 하○○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공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, 이 사건 공장에 그 설치·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전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(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, 피고 하○○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초적인 방지책에 불과하고, 앞서 본 제3의 나.의 1)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하○○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그 증거가 없다).

2) 다음으로 피고들은, 실화책임법에 따라 책임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

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,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, 위 법률에서 말하는 '중대한 과실'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

위법·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).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불길은 이 사건 건물로 번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화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,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하○○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피고들은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.

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점, ② 이 사건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었고,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이프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였으나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및 확대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,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공기유입이 많아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 하○○의 지배영역 외에서의 외부 요인도 피해의 확대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 사건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,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,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팔도화학 소속 직원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는 등 피고 하○○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, 원고 외에 다른 연소피해자도 있는 점, ⑦ 이 사건

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정치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오류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, 피해의 대상과 정도,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,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 하○○의 노력,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,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80%로 제한함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4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감정인 구분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가 소훼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201,562,715원(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 169,778,715원 +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 31,784,000원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① 피고 하○○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피고 하○○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61,250,172원(손해액 201,562,715원 × 80%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. 9. 4.부터 피고 하○○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. 9. 26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

가 있고, ② 피고 회사는 피고 하○○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 하○○과의 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인 100,000,000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. 9. 5.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하○○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손봉기

 판사 홍주현

 판사 김유미

부동산의 표시

경북 칠곡군 702-21(학상1길 159-26)

에이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,200m²

비이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사무소, 기숙사

1층 사무소 108.36m²

2층 기숙사 95.76m². 끝.